

第35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2月17日(木) 14時15分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鍾路區'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案)
5. 북악스카이웨이팔각정위탁관리허가에관한건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4. 서울特別市鍾路區'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5. 북악스카이웨이팔각정위탁관리허가에관한건(玄孝善議員 外 8人 發議) 6面

(14時15分 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在籍議員 22명 중 出席議員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臨時會 제2차 본會議 開議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鍾路區'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案)(鍾路區廳長 提出)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

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鍾路區'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市民行政委員會 洪承台 委員長!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洪承台 市民行政委員長 洪承台입니다. 존경하는 李斗鶴 議長님, 芮相浩 副議長님 그리고 지금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로 보궐선거로 동료 의원이 되고 또 우리 시민행정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펴게 된 朴鍾植議員을 이 자리를 빌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3건과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시민행정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별 공시지가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가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신설하는 등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중요시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라 심사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모법인 중기관리법이 1993년 6월 11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용어에 맞도록 용어만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 인구의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함으로써 건강 관리에 기여토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대상자를 종로구 관내 거주자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 국민의 보편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또는 지역 이기주의를 고려해볼 때 다른 구에도 우리구와 같은 맥락에서 처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료 시혜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역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삼청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동행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효용 가치를 상실한 구유지를 교환 또는 매각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종로경찰서에서 경비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 삼청동사무소 건물과 한국자유총연맹 종로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청진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승인해 오고 있는 사항이므로 올해에도 계속 무상대부 사용토록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개정(안)과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4. 2.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1994년 1월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1월18일

다. 상정일자: 제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2.16):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이래창)

가. 제안이유

-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종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함.(안 제2조제1항)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의2)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수)

-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1989년 11월 9일 제정되었으며,
-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 및 공시지가의 적용방법과 구청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서,

○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11인의 위원의 수가 부족하다고 보아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검토되고,

○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며,

○ 동조례 제3조 제4호 중 “농협”을 삭제하는 것은 은행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협도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바 삭제함이 타당함.

○ 동조례 제3조 제5호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개정하는 것은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동조례 제2조제3항제1호 공무원 수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리는 것은 위원회 인적 구성 비율상 적절하다고 판단됨.

4. 質疑要旨

(질의자: 나재암 위원, 김현중 위원, 정창희 위원)

○ 위원의 수를 20인 이하로 늘리는 이유는?

○ 위원의 수를 현재대로 할 경우 애로사항은?

○ 타구 중 이 조례를 개정할 구는 있는가?

○ 표준지가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가?

(답변자: 재무국장 이래창, 토지관리과장 박기용)

○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늘려야 함.

○ 평가 대상 필지가 많으므로 소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재평가할 토지를 심도있게 재심의 하기 위하여 인원의 증원이 필요함.

○ 타구 몇개 구를 알아보았으나, 개정할 구는 없었음.

○ 표준지가는 건설부에서 조정·결정함

5. 討論要旨

(토론자: 김현중 위원)

○ 조례 개정 내용이 미비하니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9. 其他必要한 事項: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4. 2.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월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1월18일

다. 상정일자: 제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2.16):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이래창)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다른 법령(중기관리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등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용어 “중기”를 “건설 기계”로 변경

○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로 변경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수)

○ 1993년 6월 11일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었고, 동법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동법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근거에 의거 지방세

법의 “중기”용어를 “건설기계”로 개정하였고,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가 제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내용 7호를 6호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됨.

4. 質疑要旨

(질의자: 김현중 위원)

○모법이 '93년 6월에 개정되었는데 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가?

(답변자: 세무2과장 정태무)

○내무부 및 본청을 경유하여 늦게 전달되었기 때문임.

5. 討論要旨: 없음

6. 修正案의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4. 2.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2월 12일

다. 상정일자: 제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2.16):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이성세)

가. 제안이유

○보건소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종로구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2항7호에 의거 시행중인 종로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로 확대 실시하여 노인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음.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 일부 면제의 폭을 넓히는 것은 노인 복지향상과 경로사행 고취 및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본 개정조례(안)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로 개정할 경우 종로구 관내 외에 거주하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전부가 진료비면제 대상이 되므로 진료업무에 혼란이 예상되는 바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質疑要旨

(질의자: 김현중 위원, 이현구 위원)

○65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 전액을 면제 받는가?

○65세 이상 노인이 약 10,000여명이 넘는데 전부 진료 가능한가?

(답변자: 보건소장 이성세)

○생활보호법, 경로우대법 등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본인 부담금인 진료비의 25%를 면제하고 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징수함.

○노인 전체가 진료를 받는것이 아니고 1일 약 15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음.

5. 討論要旨: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要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審 査 報 告 書

1994. 2.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経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2월 12일

다. 상정일자: 제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2. 16): 상정·의결

2. 提案説明の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이태창)

가. 제안이유

○ 동청사의 협소로 인한 신축부지 매입과 특정지역내의 공유재산을 정리, 교환하여 보존 불필요한 잡종재산의 처분등으로 새로운 재산취득을 위한 재원활용등 '94년도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삼청동사무소의 신축부지매입으로 동청사 협소를 해소하여 주민편익 행정을 증대

○ 청와대 내의 궁정동 1-9외필지 도로 1,305.5㎡ 공유재산과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청운동89-13외 5필지 대지 618.1㎡ 국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재산관리 증대

○ 안국동11-2 외1필지 8.2㎡의 지목변경된 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매각

○ 삼청동88-22 소재 2층 건물 (구 삼청동청사)을 종로경찰서에서 청와대 및 인왕산 개방에 따른 경비 초소로 종로경찰서에 계속 무상대부

○ 청진동 191-1소재 구 청진동청사 3층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 무상대부

3. 専門委員 檢討報告の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수)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

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삼청동청사 협소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동행정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확보됨에 따라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삼청동 105-1외 4필지의 동청사 부지 적정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궁정동 1-9외 8필지 1,305.5㎡는 종로구 소유 도로이나 청와대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구민을 위한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활용의 가치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이며,

○ 종로2가 39-2외 5필지 618.2㎡는 국유지 (재무부)로서 종로1·2가동사무소, 청운동 부녀복지관, 효자동 어린이집, 혜화노인정등 구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재산 활용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재산증식의 효과면에서도 교환 조치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의 적정 여부 및 쌍방의 의사 조정의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안국동 11-2외 1필지 8.2㎡는 점유자 담당 내에 위치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행정 목적에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구 재정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매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삼청동 88-22 구 삼청동청사와 청진동 191-1 종로2가 마을금고 3층 건물은 종로경찰서와 한국자유총연맹 종로지부에 무상임대의 법적 하자는 없으나, 계속되는 무상임대의 적정 여부는 심도있는 검토를 요함.

4. 質疑要旨

(질의자: 나재암 위원, 이현구 위원, 정창희 위원)

○ 삼청동청사 토지 및 건축비가 금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가?

○ 삼청동청사 신축부지에 대하여 위치, 건축조건 등을 알아 보았나?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시도 일반적

인 매도·매입 절차에 의하여 하는
가?

(답변자: 재무과장 김재영)

○토지매입비 10억, 건축비 6억이 책정
되어 있음.

○총무과에서 위치, 건축법 등을 확인하
여 적합하다고 판정 하였음.

○지방재정법에 교환기준이 있어서 그법
에 의하여 교환함.

5. 討論要旨: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

○議長 李斗鶴 洪承台 委員長! 수고했습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土地
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
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土地評
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鍾路區
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
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
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鍾路區
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
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
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
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 鍾路
區 '94年度 區有財産 管理計劃(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
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 鍾路區'94年度
區有財産 管理計劃(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5.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허가 에 관한 건(玄孝善議員 外 8人 發議)

(14時28分)

○議長 李斗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
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허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 委員長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炯述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허가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 장장 4시간 동안 쉼 없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건을 발의해주신 玄孝善議員의 8인의 議員들에게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허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의회가 1991년도부터 지난 해 제33회 정기회 기간까지 무려 3년 동안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에 의한 위탁관리로 시정 해줄 것을 종로구청장에게 요구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3년 12월 2일 허가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존의 수혜자에게 1년 6개월 간의 기간을 연장해 준 특혜는 우리 의원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각각한 차례씩 간담회를 하여 사유를 규명한 바 있습니다. 급기야 제35회 임시회의 중요한 안건으로 심사를 하게 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도시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위탁관리 허가와 관련된 도시공원법 그리고 서울시도시공원조례 및 종로구유재산관리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던 바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 사항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당장 계약 만료일인 지난 1993년 12월 31일 1개월 전까지 위탁관리자에게 차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허가를 하겠다는 통보마저도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의회가 끈질기게 요구한 사항인데도 사전 협의조차 없이 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묵과

할 수 없는 행정 처분이었으며, 모든 시설물의 위탁관리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팔각정을 보수하고 그것을 이유로 기간 연장 사유로 유도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후 지난 1994년 1월 26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보도 사항에 대한 해명 자료에 공문서 시행일자를 변조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백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시정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는 행정편의적인 행정 행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 시정을 촉구하도록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종로구청장에게 시정 요구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북악스카이웨이팔각정위탁관리허가에관한건
審 査 報 告 書

1994. 2.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2월14일
현효선의원 외 8인

나. 회부일자 : 1994년 2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994. 2.16) :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현효선의원)

가. 제안이유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는 일반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구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는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기법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주요골자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의 위탁관리 수의계약으로 선정, 특혜의혹 여론이 비등함.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 특혜의혹 속에 수의계약을 통한 연장계약을 자행한 처사는 세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으며, 대의 기구인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임.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없음

4. 質疑要旨

(질의자: 김성찬 위원, 현효선 위원, 천상욱 위원, 손광일 위원, 박우신 위원, 심재득 위원, 전영태 위원)

○'93년 12월까지 행정감사 본회의 질의시에 공개입찰을 해달라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93.12.17 연장허가한 경위는?

○1988년에 3년 계약하고 '91년 1차 연장계약해 주었다. '93년도에 구청에서 검토한 시기를 말해주고, '91년 1차 기간 연장해 주었는데, 왜 또 연장해 주었으며, 공문 시행시기를 알려 달라.

○공문시행시기가 우리에게 제출된 서류에는 '93.12.17일이다 왜 위증하는가?

○'92년 시 지침을 1년간 묵이게 한 것은 왜인가? 직무유기 아닌가?

○3천 몇백만원에 위탁관리 허가를 받아 2억7천여만원을 들여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자기것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계약 연장한 것을 취하하여 공개경쟁 계약은 할 수 없는가?

○'88년부터 '93년까지 팔각정 영업 실

적을 검토해 보았는가? 연간 수익을 계산하여 임대료를 결정했어야 할 것 아닌가? 산출 근거는?

○공익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는지?

○어느 법에 적용하여 계약했는가?

○40여명의 종업원이 농성을 해서 연장을 해주었다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또하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에 걸쳐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종업원에 관한것은 퇴직금 제도도 있고 한데 무엇을 검토했으며, 차후에는 공개로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는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가? 그리고, 세수에 있어서 공익 행정을 했는가?

○'87 '88년부터 2억7천만원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기간연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수하도록 했으면 승인해 준 사본을 제출해 주고 성북구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어 공개 입찰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공개하고, 구의원이 지적한 것은 묵살한 것인가?

○정당한 사용료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91~'93년까지 1년에 임대료가 얼마인가?

(답변자: 건설국장 임동국)

○의원 여러분과 협의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 기간연장 경위는 기존 허가자에게만 허가해 왔으나, 사회분위기상 일반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검토한바 3년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에도 1년 6개월만 연장하고 이후는 일반 경쟁할 것을 조건을 부하여 허가하였음.

○'92.11.19 시장 지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93. 검토한 시기는 '93.12.22~23이다. 그리고 공문 시행시기는 '93년 12월 27일이다.

○카피가 잘못된 것이다. '93.12.27일 맞다.

○'93년 12월 8일 6차 도시건설위원회 당시 관계과장이 보고했다. 지침내용이

계약 만료후에 적용하도록 해서다.

- 공원시설내 각종 시설은 특성상 일반 매점과 다르다.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독점을 해 자기가 보수 정비하고 있는것이 통례이다.
-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임대를 하려면 구에서 예산으로 보수정비해야 할텐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다.
- 지금까지는 평생동안 자기가 할것으로 알고 시설 투자한 것이다.
- 당장 취소는 어렵다. 허가취소 사유가 없어 일방적 취소할 수 없고, 수허가자와 종업원을 동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예상되어서다.
- 공원내 매점은 수익성을 가지고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만을 가지고 허가하였고 수익성을 파악한 것은 없다.
- 40여명의 종업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기능 마비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다.
- 건물은 구유재산조례22조 토지는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했음.
- 공개로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는 통보하지 않았다.
- '92년 12월 17일 시 지침후에 적용되는 것이라 연장해 주었다. 개선안에서의 1회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1회이지 과거의 사항이 아니다.
- 구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허가했다고 본다.
- 공개를 했으면 세수에 증가를 가져올것으로 보나, 스카이 골프장과는 달리 세수증대만을 생각할 수 없고, 공원관리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 투자한 것을 인정했다고 한것은 아니고 사전 보수승인 여부는 확인해 본 뒤 답변하겠음. 성북구 사항은 설명과 정에서의 사항임.
-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그리

고 건물은 평가액에 의한 사용료임.

- '92...26,135,000원
- '93...34,419,000원
- '94...50,929,000원임.

5. 討論要旨

(토론자: 박우신 위원)

- 구의회에서 3년동안 계속 공개입찰토록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기간만료 1개월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없이 연장해준것은 직무를 유기했으며
-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수 또는 시설하도록 묵인하였고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받은 사실없이 기간연장사유로 유도한 사항과
- 특혜 의혹 해명자료의 공문서 시행일자를 변조하여 제출한 사항등 잘못된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시정을 촉구하자.

6. 審査結果: 토론시 박우신 위원 의견대로 가결

7. 少數意見의要旨: 해당없음

8. 其他必要한 事項: 해당없음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허가에 관한 건의(안)

도시 공원내 각종 시설물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의회가 '91년도 부터 공개입찰에 의한 위탁관리로 시정할 것을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1993.12.27 허가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간연장 허가한 것은 열악한 구재정 확보에 크게 반할 뿐 아니라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종로구청장은 다음사항을 엄격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계약 만료일('93.12.31)1개월전에 당시 위탁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공개입찰에 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조치없이 1년6개월을 기간연장 허가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묵과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대한 조치
- 구청장 사전 승인없이 위탁관리인 임의로 보수 또는 시설하도록 묵인하고, 이에 따

른 필요한 조치도 하지않고 더구나 그것을 기간연장 사유로 유도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후 문책

○특혜의혹 해명자료의 공문서 시행일자 임의 변조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한 명백한 규명

○議長 李斗鶴 李炯述 委員長! 수고했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있음)

예, 金憲中議員 토론이 있으시면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金憲中議員 안녕하십니까? 金憲中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는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의원 중 모종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간 종로구의회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전파되고 있는 팔각정 위탁관리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고 성의있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다루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발표해준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측 관계관들의 행정 미숙 등 또는 시행착오 등으로 인하여 마치 의장님이 공문 또는 진정서 등을 접수하고서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처럼 항간에 유포된 처사는 정말 의회 의원을 경시하고 의장단을 모독하는 처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장님 이상 부구청장님 선에서라도 진실이 담긴 사과가 본회의장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고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가부를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원 중 체육을 구실로 단체를 이끌면서 '93년 500만원, '94년 1,920만원을 구청 예산에서

배정받고 있으나 단체 중 특히 조기축구회 같은 돈이 많은 그러한 축구회 지원 기타 탁구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이 자금이 사무실 운영 등에 쓰여지고 있다는 그러한 풍문의 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전술한 팔각정 차모씨를 생활체육회 이사로 영입하면서 저는 잘 모릅시다마는 기부금 일부가 들어왔고 또는 향연까지 그 곳에서 베풀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속담에 瓜田에 不納履요 李下에 不整冠인지 또는 鳥飛梨落格인지 정말 무엇인지 생각할 때 거기에 중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팔각정에 관한 많은 스캔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론을 완결함을 의원으로서 반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겠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을 보면 10년을 무상으로 졌었고 다시 대다수가 5년 3개월, 3년 1개월, 3년, 3년 또 1년 6개월에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을 겪으면서 금품이 자기네끼리도 왔다갔다 하고 의혹이 있다는 설이 있으므로 기필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재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金憲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토론하실 의원님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로서의 토론이 개진되었다고 느껴지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장이 金憲中議員의 토론 내용을 요약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석상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깊은 사과가 있었다고 느껴집시다마는 본회의장에 시민행정위원회 의원들도 많이 계신만큼 공식적인 실무 책임자로 하여금 공식 사과를 하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개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안건이 토론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기로 하고, 두번째는 스카이

웨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단체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은 참고하고 이것은 본 안전과 별도의 문제니까 오늘 이 석상에서는 그것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장시간 동안 검토를 했지만 더 심도있게 또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초선 의원의 참여임기의 마지막임을 기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재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의 문제가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구청 당국의 최소한도 부구청장 선이라도 확실한 공개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토론에 나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成贊議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贊議員 金成贊議員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으로부터 참 심각한 토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전혀 저는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몰랐던 사항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이사로 차선정씨를 끌어들여 가지고 찬조금을 기탁받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10년간 무상대부를 했고, 5년 3개월 또 3년, 3년 하는 동안에 금전이 오고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과연 금전이라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단다가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철저히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를 한다 공개사과를 한다, 충분히 우리가 '91년도부터 본회의 석상에서나 행정감사 때나 여러번 지적이 되었던 것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의원이 잘 알고 있고 제일 나중에 동

료 의원 金憲中議員께서 10년 간 무상 또 5년 3개월 또 3년, 3년 하면서 다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을 때는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저는 거기에 우리 동료 의원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金成贊議員! 수고했습니다. 방금 金成贊議員께서 토론했습니다는 거기에 우선해서 金憲中議員의 토론 내용 중 첫째인 구청 당국의 책임성있는 본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공식 사과를 요구하십니까? 공식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議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玄孝善議員 玄孝善議員입니다. 어제 저희 9명이 5,6시간에 걸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金成贊議員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金憲中議員님 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예, 金憲中議員 말씀하십시오.

○金憲中議員 두번째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여기에서 뇌물을 받아먹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시설물 무상 위탁이라는 것은 박인순씨가 '69년 9월 28일부터 '78년 9월 26일까지 10년을 무상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아마 이것을 기부채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8년 9월 27일부터 '83년 11월 31일까지 5년 3개월을 다시 박인순씨가 다시 했었습니다. 위탁관리했죠. 그 다음에 '84년 2월 4일부터 '87년 12월 31일까지 3년 10개월을 장신득씨라는 사람이, 저는 잘 모릅니다. 제보를 받아서 압니다. 이 근방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장신득

씨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을 누가 했느냐, 차선정씨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을 역시 전술한 차선정씨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문제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 1년 6개월을 다시 차선정씨로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서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뇌물이 왔다갔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의원을 포함하고 저 의원을 포함하고 그것이 비화되어 가지고서 의회 의장단까지 흔들리는 처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어떤 체육회가 그 사람을 영입하면서 항간에 무슨 몇푼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그것은 이사 자격으로 기부금을 받았는지 그냥 받았는지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발설이 되었으니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게 이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구의원이 이 권에나 개입하고 등등의 허물을 벗어야 되겠기에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것을 짚고서 가부를 결정하는 뜻에서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자꾸 말이 비약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담 사항으로서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도 아까 4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제 있으면서 검토해 보니까 무려 6시간 넘게까지 질의 응답과 토론이 충분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께서도 다같은 분류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는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묻고자 하는 것은 토론의 발의인 공개사과에 대해서 재청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문제부터 종결해 나가고.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지금 공개사과라는 것은 공개사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이런 전부가 사과를 하게 되면 전부 이런 것을 안 하기로 하는 대원칙에 사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건설위원으로서.)

○議長 李斗鶴 金成贊議員! 나와서 하세요.

○金成贊議員 지금 우리 동료 의원 金憲中議員이 재차 나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째서 꼭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의 허물을 벗겨주려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담배 한 갑도 안 피웠는데 이런 누명을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도 차선정씨가 장씨한테 5천만원을 조경비로 해가지고 사례비로 해서 넘겨줬다는 각서까지 있습니다. 제보가 아니라 그 각서 내용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69년도에 개설해서 '79년까지 자기가 개설해 가지고 무료로 관리를 임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기부채납 구청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 후로 5년 몇개월인가 또 장씨라는 분이 관리를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88년도에 차씨가 권리금조로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각서 내역이 나와있더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회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가 체육회 이사로 스카우트해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간 연장 1년 6개월 하기 위해서 금전이 오고갔다 하는 줄 알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해를 마치 하기 좋게 어느 공무원이 돈이나 받고 연장해준 것처럼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예, 李炯述議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李炯述議員입니다. 金憲中議員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발족한 이래 처음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특위를 구성하든 뭘 하든 했지만 엄연하게 지금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 업무가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회부하기 직전에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하자고 한 의원이 여러 분이 특위를 구성하자고 심지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이 건이 다른 의원들이 어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단 합법적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사항을 조금 전 특위 구성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란 얘깁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정말 어제도 한 치의 쉼도 없이 계속 4시간 이상을 심지어 자리를 뜨지 않고 관계국장을 불러서 수없이 질의하고 의혹 사항을 풀고 푸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특위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의혹 사건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이 나중에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金憲中議員께서 나오셔서 뒤에 돈 거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돈거래가 뒷거래가 있고 무슨 공무원이 돈 먹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전 의원 22명이 함께 모여서 자세한 걸 밝혀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실이 없는 종로구 의원에 먹칠을 하자는 것입니까?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더 다루라는 것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를 해체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안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더 다루라고 하든지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돈거래 뒷거래가 있었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안전을 되돌려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시 심도있게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전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면 이 안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 안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을 들으려는 것은 그래서 이 안전은 제가 볼 때에 분명히 특위 구성은 바로 도시건설위원회가 특위하고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든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하고 전혀 할 일 없는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이걸 특위 구성하는 건은 반대합니다.

○議長 李斗鶴 사전에 토론하실 의원님에 대해서 재차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토론에 난데없이 생활체육회라니 기타 등등 하는 것은 참고 사항이지 소관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 문제를 유념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李萬魯議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萬魯議員 李萬魯議員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심의했고 모든 걸 했는데 말썽많은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위탁관리 허가에 대한 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처리 사항은 3개 항목이며 특히 2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의 사항이 있는 바 본 행정 사항은 구청장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 자체에서 조사 처리하도록 하고 구의회가 촉구한 공개입찰을 하지 않음에 대한 구청장의 공개사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李萬魯議員님께서 동의하신 데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憲中議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憲中議員 議員님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나왔어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결론은 구청 관계관들의 행정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또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구청局長님선 이상의 사과로써 끝내자 이말입니다. 그것이 1안입니다. 먼저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 지

난번 선거에서도 이슈가 됐듯이 議員들이 다시 말하면 이권에 급급하고 있다 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풍문이 있어요. 장시간 이렇게 이리가고 저리가고 한 수10년간의 관제에서 보다 더 또 더더욱 생활체육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의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누명을 벗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지금 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이 팔각정 입찰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하는건 아니고 그것은 그 사과로 끝내자 하는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거래 관계도 이렇게 장시간 10년, 20년 경과되는 가운데 金成贊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권리금을 주고 뭐고 간에 부작용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도 몇 명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本會議에서라든가 간담회에서라도 이것을 마무리져야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고 특히나 도시건설위원회 委員님들께서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먼저 행정감사할때 이 팔각정 문제에 대해서 세수증대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더 그 내용을 알고싶어하는 마음에 여러가지 토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만큼 지금 현재 李萬魯議員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러분들이 異議가 없으면 이대로 성립되겠습니다. 그러면 李萬魯議員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여러 議員께서 잘 아다시피 거수 또는 기립 표결,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단축과 여러가지 여건에 입각해서 거수표결하고자 本議長의 직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李萬魯議員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議員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時06分 舉手表決)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는 議員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까?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名中 찬성이 13표, 기권이 4표로써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당시 실무의 총책을 맡았던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구청장께서 부임한지 불과 몇일 안됐으니까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개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副區廳長 諸他龍 평소 존경하는 李斗鶴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을 모시고 팔각정 공원 시설물 위탁관리 연장에 대하여 사전에 區議會와 협의없이 기간 연장 처리하게된 데 대해서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잠시 처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바지만 팔각정은 '69년 초에 최초 건설자가 건설해서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뒤에 장심득, 차선정 두 분에게 위임이 돼서 전체적으로 세 관리자가 위탁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차선정씨는 '88년 1月1일부터 위탁관리해 오다가 '91년부터 區議會에서 위탁관리를 공개하여 구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여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년말 위탁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장급 이상 전간부가 모여 가지고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공개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종합검토해 본 결과 최초로 위탁관리자가 그동안 시설물을 유지 보수해 왔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둘째 區廳에서 '94년도부터는 공개한다는 예고를 못한 과실도 있고 실제로 종업원이 40여명이나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市에서도 서울 市 전체의 공원시설물 위탁관리는 현재까지 수의계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분위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공개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되 기연고자와 사회 분위기를 조정해서 1회3년에 한해서 기간 연장한 후 공개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본 결과 당장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기를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으로 팔각정과 탐골공원은 1년6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6개월 후에 보수를 해서 공개하는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1년뒤에는 공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議會에 3개년에 걸친 요청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재삼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議會가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區廳에서 이러한 관심 사항들이 우리 청내에 의사전달이 잘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구청의 주요사항을 議會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議員님들도 저희들의 중요한 업무시행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나감으로써 區議會와 상호 신뢰속에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이런 지적사항은 區廳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들의 관대하신 용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이상으로 북악스카이웨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 결과 李萬魯議員의 동의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羅在岩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羅在岩議員 羅在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李斗鶴議長님과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 議員님들! 불초 제가 생활체육 종로구협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료 세 사람이 각각 연합회를 하나씩 맡아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등 주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선배 議員이신 金憲中議員님께서 오비이락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5월 제가 협의회 회장을 책임맡은 그 뒤에 우리 종로구에 생활체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사회를 결성하기로 생각을 갖고 이사회를 선정하는 중에 저하고 평소 가깝

게 지내고 있던 새마을 이화동 회장을 지냈던 최평전회장과 상의하다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추천을 받고 제가 몇 분과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공개적으로 이사 30여분을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분이 나는 이 팔각정의 주인이란 것만 알았지 입찰을 언제 본다 이 팔각정에 관한 이런 일이 있고 그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丁昌熙議員도 여기 계십니다만 참 좋은 분이다 그리고 군출신이고 장교출신이기 때문에 이런데 체육활동에는 일가견이 있다 해서 저는 아주 황금알식으로 해서 영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촉하는 날 공개적으로 몇 분이 출연금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분이 백만원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오아시스에 물을 주는 것처럼 저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었고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큰 보탬이 되고 그 후로 제가 지금 돈의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게이트볼大會場에서 그 분이 10만원을 주신걸로 알고 있고 탁구대회가 10월에 있었는데 그때 10만원을 주시고 또 축구대회에 가서 30만원 주고 그 외에는 일체 저는 제나름대로 고맙다는 것뿐입니다. 이 분이 이렇게 저희들 체육회에 헌신해 주시고 귀중한 돈을 주시고 해서 정말 감지덕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 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議員들끼리 있는 일이 그렇게 빼돌리지게 보이는지, 동료 의원끼리 서로 감싸줄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서로 티격태격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 보궐선거장에서 마치 이권개입을 한 원인 제공이 생활체육에 있는양 말씀하실때 정말 가슴아픕니다. 었저녁에는 저는 丁昌熙議員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니 말이죠 명예훼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담지 않다 언젠가 진의가 밝혀질거니 그렇게 알고 있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것

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그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팔각정 이것 입찰관계 문제는 저는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는걸로 구린내가 나는 심경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 그걸 꼭 그렇게 모의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이렇게까지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本人 또 동료 세 사람 議員들한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이제 씨를 뿌리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 議員들이 만들어준 예산 더 내라든가 전용 일체 않고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제자리따로 만들고 생활체육 자리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 건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옮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지해 주시고 아침 새벽부터 각 운동장에 다니면서 각 議員들 생활체육 맡아 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도움말씀 없이 이것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쁩니다. 잘해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서없는 해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이상으로 제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閉會를 선포합니다.

(16時22分 閉會)

○出席議員 17人

李斗鶴	芮相浩	李憲九
千相旭	玄壽漢	玄孝孝
李萬魯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朴鍾植
朴禹信	朴勸先	金憲中
孫光一	金成贊	

○關係公務員

副區廳長	諸他龍
財務局長	李來昶
建設局長	林東國
保健所長	李星世